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성분으로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단체(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전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57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보건복지부(보건 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주무관 이은희 사무관 연가 마약관리과장 전결 2024. 9. 13. 김은주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5704 (2024. 9. 13.)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01호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4 팩스번호 043-719-2890 / leh0108@korea.kr / 대한민국 공개